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정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374 발의연월일: 2025. 5. 2.

발 의 자:신정훈·장종태·채현일

박정현 · 모경종 · 위성곤

김용민 · 황명선 · 이광희

부승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공직선거법」 제250조는 후보자 본인 또는 타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, 구성요건이 불명확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.

특히 "행위"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는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명확한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며, 이로 인해 자의적 법해석 및 집행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
또한 단순한 의혹제기나 경미한 표현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, 당 선무표형이 강제되는 등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 이 있음.

이에 본 개정안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한하여 처벌하도록 구성요건 을 명확히하고 자 함(안 제250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0조제1항 중 "출생지·가족관계·신분·직업·경력등·재산·행위 ·소속단체"를 "출생지·가족관계·신분·직업·경력등·재산·소속단 체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0조(허위사실공표죄) ①당선	제250조(허위사실공표죄) ①
되거나 되게 할 目的으로 演說	
・放送・新聞・通信・雜誌・壁	
報・宣傳文書 기타의 방법으로	
候補者(候補者가 되고자 하는	
者를 포함한다. 이하 이 條에	
서 같다)에게 유리하도록 후보	
자,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	
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<u>출생</u>	<u>출생</u>
지・가족관계・신분・직업・경	지・가족관계・신분・직업・경
력등・재산・행위・소속단체,	력등・재산・소속단체
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	
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	
사실[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	
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	
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	
포함한다]을 公表하거나 公表	
하게 한 者와 허위의 사실을	
게재한 宣傳文書를 配布할 目	
的으로 소지한 者는 5年이하의	
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	
에 處한다.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